



고용노동부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명령(환수)처분 공시송달 공고

1. 관련

- 가.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제한), 제28조(반환명령 등), 시행규칙 제17조(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제한 통지), 제18조(반환명령 등 절차), 제19조(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)
- 나. 행정절차법 제14조

2.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처분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.

- 공고번호: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(공시송달) 공고 제2024-3호
- 공고기간: 2023.1.3. ~ 2024.1.17.(15일간)
- 공고방법: 창원지청 및 창원고용센터 홈페이지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불임 참조

불임: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

주무관 **송은영** 팀장 전결 2024. 1. 3.
양수정

협조자

시행 창원고용센터-187 접수

우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(상남동 27-3 고용지원 / <http://moel.go.kr/changwon/>
센터빌딩)

전화번호 055-239-5354 팩스번호 0508-8230-0427 / sey2020@korea.kr / 비공개(6)